

의안
번호

329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기 획 위 원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09. 02.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경수현 의원 외 8인

나. 의안번호 : 제329호

다. 제출일자 : 2024. 08. 14.

라. 회부일자 : 2024. 08. 28.

2. 제안이유

- 2023년 8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의 공사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법정 하자보수기간'까지 연장하도록 개선 권고함.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공사 안전관리의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확대함(안 제9조)
- 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항으로 구분하고, 부실공사의 신고 전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 실시 규정을 명시함(안 제10조, 안 제10조의2)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각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 08. 20. ~ 2024. 08. 26.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성북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세분화하고, 부실공사 신고 처리와 부실 측정에 관한 규정을 구분하여 구체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안 제9조제4항 및 제6항은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기한 기준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각 법규에 정해진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안 제9조제4항 및 제6항 개정 전·후 비교〉

현행	개정안
제9조(부실공사 신고·접수) ① ~ ③ (생략)	제9조(부실공사 신고·접수)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④ ----- ----- ----- 아니한 경우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⑥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별표 4,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별표 3의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별표 9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현재 부실공사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접수 기간이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건설공사 종류별 특성상 준공일 2년 이내에 발견할 수 없는 부실시공에 대하여는 신고·접수조차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건설공사 종류별 특성을 고려한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세분하여 확대하는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사료 되며, 이와 관련하여 2023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서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 각 법규별 하자담보 책임기한 >

법규	공사	하자담보 책임기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교량, 터널, 도로, 상·하수도 등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발전설비 공사, 송전설비 공사 등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터널식 또는 개착식 등의 통신공사 등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피난기구, 유도등, 자동소화장치 등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곽, 탑석조물 등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 안 제10조제3항 삭제 및 제10조의2 신설은 부실 측정에 관한 규정이 신고 처리 조항에 혼재되어 있어 현행 조항을 삭제하고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항으로 구분하며, 부실공사의 신고 건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 실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의2 개정 전·후 비교>

현행	개정안
제10조(부실공사 신고처리) ①·② (생략)	제10조(부실공사 신고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신고센	<삭제>

터의 장과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2(공사의 부실 측정) ① 발주부서는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3조에 따라 부실 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신고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영 제88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는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관내 부실공사 신고의 활성화를 이루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보다 적극적인 부실공사 방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 됨.

참 고 자 료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6. 9.>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0년
2. 제1호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5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2. 11.>

② 생 략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1. 5.>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공 사 별	세 부 공 종 별	책임기간
1. 교 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③교량 중 ①·②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2년
2. 터 널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3. 철 도	①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4. 공항·삭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5. 항만·사방간척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6. 도로	②① 외의 시설	5년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및 측구(길도랑)를 포함한다]	3년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2년
7. 댐	①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을 말한다) 부분	10년
8. 상·하수도	②① 외의 시설	5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관로 매설·기기설치	3년
9. 관계수로·매립		3년
10. 부지정지		2년
11. 조 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12.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5년
	③①·② 외의 시설	3년
13. 기타 토목공사		1년
14. 건 축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10년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③건축물 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년
15. 전문공사	①실내건축	1년
	②토 공	2년
	③미장·타일	1년
	④방 수	3년
	⑤도 장	1년
	⑥석공사·조적	2년
	⑦창호설치	1년
	⑧지 붕	3년
	⑨판 금	1년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년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3년
	⑫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2년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⑭보일러 설치	1년
	⑮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①⑥ 아스팔트 포장	2년
①⑦보 링	1년
①⑧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년
①⑨온실설치	2년

비 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1. 1. 5.>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11조의2 관련)

전 기 공 사 의 종 류	하 자 담 보 책 임 기 간
1. 발전설비공사	
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나. 가목 외 시설공사	3년
2. 터널식 및 개착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을 말한다) 전력구 송전 · 배전설비공사	
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나. 가목 외 송전설비공사	5년
다. 가목 외 배전설비공사	2년
3. 지중 송전·배전설비공사	
가. 송전설비공사(케이블공사 및 물밀 송전설비공사를 포함한다)	5년
나. 배전설비공사	3년
4. 송전설비공사(제2호 및 제3호 외의 송전설비공사를 말한다)	3년
5. 변전설비공사(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를 포함한다)	3년
6. 배전설비공사(제2호 및 제3호 외의 배전설비공사를 말한다)	
가. 배전설비 철탑공사	3년
나. 가목 외 배전설비공사	2년
7.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1년
8.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1년

전기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법 제37조제1항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 3. 29., 2019. 8. 6., 2021. 1. 5.>

1. 터널식 또는 개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을 말한다) 등의 통신구공사: 5년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공사: 3년
 - 가. 케이블 설치공사(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 나. 관로공사
 - 다. 철탑공사
 - 라. 교환기 설치공사
 - 마. 전송설비공사
 - 바. 위성통신설비공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공사 외의 공사: 1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5. 1. 6.>

1.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2.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3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4. 5. 7.>

국가유산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제19조 관련)

종류	세부 공종	책임기간
1. 성곽	가. 석성(石城: 돌로 쌓은 성) 1) 화강석 등을 방형 형태로 다듬어 쌓은 구조	5년

	2) 자연상태의 돌을 사용하여 쌓은 구조	3년
	나. 토성(土城: 흙으로 쌓은 성), 혼축성(混築城: 돌과 흙을 섞어 쌓은 성)	2년
	다. 전축성(塼築城: 벽돌로 쌓은 성)	3년
	라. 목책성(木柵城: 나무로 둘러 막은 성)	1년
2. 탑·석조물	가. 석불(石佛), 승탑(僧塔: 고승의 사리를 모신 탑), 비석(碑石), 석등(石燈), 당간지주(괘불이나 불교적 내용을 그린 깃발을 건 장대를 지탱하기 위해 좌우로 세운 기둥), 고인돌, 석빙고(石氷庫: 돌로 만든 얼음 창고), 석탑(石塔), 석교(石橋: 돌다리) 등	5년
	나. 전탑(塼塔)	3년
	다. 새로운 재료로 교체한 석재부분	5년
3. 목조건축물	가. 지붕	
	1) 산자(欂栳: 가는 나뭇가지를 엮어 지붕 서까래나 고미가래 위를 덮는 것) 또는 개관(서까래 위를 덮는 널빤지) 이상의 기와지붕	3년
	2) 산자 또는 개관 이상의 너와지붕	2년
	3) 역새 등을 이용한 선사시대 움집	1년
	4) 산자 또는 개관 이상의 초가지붕	1년
	나. 목부재(木部材)	
	1) 기둥, 창방(昌枋), 대들보, 도리(서까래를 받치기 위해 기둥과 기둥사이에 설치한 부재) 등 주요 구조재	3년
	2) 그 밖의 구조재	2년
	다. 목조건축물의 수장재(修粧材: 내외부 장식재)	1년
	라. 기초 및 기단	
	1) 정(井)자형 장대석 기초	10년
	2) 강회잡석 적심기초, 화강석 가공주초(加工柱礎, 원석을 다듬은 주춧돌)	7년
	3) 도드락다듬(돌기가 달린 망치로 석재를 다듬는 일) 이상의 석조(石造) 기단·월대(月臺: 궁궐 또는 향교 등 주요 건물 앞에 설치하는 넓은 기단 형식의 대)	5년
	4) 그 밖의 기초 및 기단	3년
	마. 미장(벽이나 천장, 바닥 등의 바탕면에 진흙이나 회 등을 바름) 및 아궁이, 굴뚝, 방고래(구들장 밑에 불길과 연기가 통하는 길)	1년

	등 구들과 관련되는 시설의 수리 바. 건축물의 단청(벽화, 불화 포함)	2년
4. 담	가. 사괴석(四塊石) 담장	3년
	나. 돌담, 자연석담, 판축(版築)담(관자 사이에 흙을 넣어 다진 담, 토(土)담, 전축(塼築)담(벽돌로 쌓은 담), 와편(瓦片)담(진흙과 깨어진 기와 조각으로 쌓은 담)	2년
5. 분묘	가. 봉분 시설(잔디심기는 제외한다)	2년
	나. 구조부 1) 적석총(積石塚: 돌무지무덤), 석곽묘(石槨墓: 돌덧널무덤)	5년
	2) 전축분(塼築墳: 벽돌을 쌓아 돌린 무덤)	3년
	3) 목곽묘(木槨墓: 나무덧널무덤)	1년
	다. 병풍석(屏風石)	3년
6. 도로	가. 암거(暗渠: 속도랑), 배수로, 측구(側溝: 길도랑), 맨홀	2년
	나. 포장 1) 박석(薄石), 포방전(鋪方磚)	2년
	2) 마사토(磨砂土: 점성이 없는 백토), 강회다짐(생석회 흙다짐), 혼합토 등	1년
7. 철물	가. 장식철물, 보호철물, 관리철물	2년
	나. 구조철물, 보강철물	3년
8. 조경·식물보호·발굴지 정비·벽화 등	가. 조경 시설물 및 조경 식재	2년
	나. 식물 보호	3년
	다. 발굴지 정비	2년
	라. 불상개금(佛像改金: 불상에 금칠을 다시 하는 것), 도금(鍍金), 탕화(부처, 보살, 성현을 그려 벽에 거는 그림), 옷칠 등	5년
9. 국가유산보호·보강 시설	전통한옥양식 건축물 또는 보호각(국가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 보호시설의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된 내력벽, 기둥이나 주요 구조부	5년

<적용방법>

- 위 표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기초부터 다시 복원하거나 신설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위 책임 기간의 3분의 2로 한다.

가. 기존의 유구(遺構)나 건축물의 가구 등에 덧붙이거나 보충하여 복원·보수하는 경우

나. 기존 구조나 부재를 해체한 후 해체한 부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사용하여 복원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2. 위 표에 없는 국가유산수리 공종(工種)은 위 표의 유사공종에 따르며, 현대식 재료·공법으로 시공한 구조물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둘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에서 공종별로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 기간이 긴 기간으로 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으로 한다.